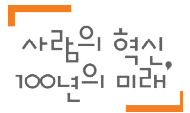




인사혁신처

인사혁신처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수시 재산신고 사전정보 조회대상자 선정 안내

1. 평소 공직윤리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2. 윤리업무 담당자는 등록기준일이 2018.2.2.~2018.3.1.인 등록의무자가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동의서(이하 '동의서')를 2018.3.15.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2018.3.21.까지 조회대상자 선정 및 확정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소속 지방청 및 관할 시·군·구에 반드시 전파

◆ 윤리업무 담당자는 PETI 시스템 심사자료관리-수시조회관리-수시조회대상자 선정에서 '미선정자' 탭에 있는 주민번호 오류자 및 동의서 미확인자를 확인하여 조치해야 함. 또한 '기타' 탭에 있는 등록의무자의 경우 반드시 '개별선정'하여야 수시조회 대상자로 선정되며 선정된 명단에 대해 '확정' 처리하여야만 등록의무자가 수시재산신고 사전정보를 받을 수 있음.

끝.

